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87
----------	-----

제출연월일 : 2007. 8. 24.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통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존 정원 범위내에서 직종·직급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나. 대전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신규 증원없이 3,123명으로 하고,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직종·직급별로 조정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협 의 : 관련부서 협의완료

다. 기 타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2) 입법예고 : 2007. 8. 10. ~ 8. 20. / 접수의견 없음

라. 참고자료

(1) 정원조정

－ 시본청 :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기능8급 △1명)

－ 사업소 : △3명(5급 1명, 7급 △2명, 8급 △3명, 기능8급 1명)

• 지하철건설본부 : △5명(7급 △2명, 8급 △3명)

• 서울사무소 : 1명(5급)

• 여성회관 : 1명(기능8급)

(2) 직종변경

－ 별정직 4급 → 일반직 4급(비서실장)

(3) 직급조정

－ 일반직 : 11명(7급→6급)

－ 기능직 : 6명(9·10급→6·7·8급)

정원증원에 따른 비용소요 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정원 : 증원없이 직종·직급 조정

3. 비용소요 내역

구 분	소요비용(천원)	산 출 기 초
합 계	64,967	
⊙ 인건비 소계	49,844	
본 봉	31,526	본봉×12월
정 근 수 당	2,627	본봉×50%×2회
정근수당가산금	-	기준액×12월
시간외근무수당	7,485	기준액×45시간×12월(5급이하)
가 족 수 당	-	배우자 : 30,000원×0.78×12월 기 타 : 20,000원×1.48×12월
자녀학비보조수당	-	중학생 : 49,650원×0.2×4회 고교생 : 398,100원×0.16×4회
정액급식비	-	130,000원×12월
교통보조비 등	240	기준액×12월
명절휴가비	2,702	본봉×60%×2회
가계지원비	4,513	본봉×16.7%×12회
연가보상비	751	본봉×10/30
⊙ 물건비 소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기준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기준액×12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기준액×정원
직책급업무추진비	-	기준액×12월
직급보조비	-	기준액×12월
대민활동비(특정업무비)	-	50,000원×12월(기준액×12월)
⊙ 이전경비 소계	15,123	
성과상여금	4,684	본봉×100%(평균)
건강보험부담금	2,895	총보수×2.24%
연금부담금	7,544	보수월액×8.5%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단위 : 명)

직종, 직급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총 계		3,123	1,085	62	1,066	910
정무직 (시장)		1	1			
일반직	소 계	1,471	849	34	40	548
	2~3급	1		1		
	3급	12	8		1	3
	3~4급	1	1			
	4급	69	44	3	4	18
	5급	234	177	3	12	42
	6급	485	331	16	12	126
	7급	489	247	11	11	220
	8급	180	41			139
소방직	소 계	973	62	0	911	0
	소 방 정	8	3		5	
	소 방 령	27	12		15	
	소 방 경	57	7		50	
	소 방 위	61	7		54	
	소 방 장	141	14		127	
	소 방 교	281	18		263	
	소 방 사	398	1		397	
지도직	소 계	33	0	0	33	0
	지도 관	2			2	
	지도 사	31			31	
연구직	소 계	82	3	0	57	22
	연구 관	14			12	2
	연구 사	68	3		45	20
별정직	소 계	43	19	9	0	15
	1급상당	1	1			
	4급상당	6	1	4		1
	5급상당	7	3	3		1
	6급상당	9	6			3
	7급상당	14	5	2		7
	8급상당	6	3			3
기능직	소 계	520	151	19	25	325
	6급	25	11			14
	7급	56	18	3	3	32
	8급	94	25	6	3	60
	9급	160	29	4	11	116
	10급	185	68	6	8	103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2조----- ----- ----- ----- -----</p>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단위 : 명)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단위 : 명)							
기관별 직종/직급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 관	사업소	기관별 직종/직급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 속 기 관	사업소		
총 계	3,123	1,082	62	1,066	913	총 계	3,123	1,085	62	1,066	910		
정무직(시장)	1	1				정무직(시장)	1	1					
일반직	소계	1,470	844	34	40	552	일반직	소계	1,471	849	34	40	548
	2~3급	1		1				2~3급	1		1		
	3급	12	8		1	3		3급	12	8		1	3
	3~4급	1	1					3~4급	1	1			
	4급	68	43	3	4	18		4급	69	44	3	4	18
	5급	232	176	3	12	41		5급	234	177	3	12	42
	6급	473	319	16	12	126		6급	485	331	16	12	126
	7급	500	256	11	11	222		7급	489	247	11	11	220
	8급	183	41			142		8급	180	41			139
소방직	소계	973	62	0	911	0	소방직	소계	973	62	0	911	0
	소방정	8	3		5			소방정	8	3		5	
	소방령	27	12		15			소방령	27	12		15	
	소방경	57	7		50			소방경	57	7		50	
	소방위	61	7		54			소방위	61	7		54	
	소방장	141	14		127			소방장	141	14		127	
	소방교	281	18		263			소방교	281	18		263	
	소방사	398	1		397			소방사	398	1		397	
지도직	소계	33	0	0	33	0	지도직	소계	33	0	0	33	0
	지도관	2			2			지도관	2			2	
	지도사	31			31			지도사	31			31	
연구직	소계	82	3	0	57	22	연구직	소계	82	3	0	57	22
	연구관	14			12	2		연구관	14			12	2
	연구사	68	3		45	20		연구사	68	3		45	20
별정직	소계	44	20	9	0	15	별정직	소계	43	19	9	0	15
	1급상당	1	1					1급상당	1	1			
	4급상당	7	2	4		1		4급상당	6	1	4		1
	5급상당	7	3	3		1		5급상당	7	3	3		1
	6급상당	9	6			3		6급상당	9	6			3
	7급상당	14	5	2		7		7급상당	14	5	2		7
기능직	소계	520	152	19	25	324	기능직	소계	520	151	19	25	325
	6급	23	10			13		6급	25	11			14
	7급	53	16	3	3	31		7급	56	18	3	3	32
	8급	93	25	6	3	59		8급	94	25	6	3	60
	9급	161	30	4	11	116		9급	160	29	4	11	116
	10급	190	71	6	8	105		10급	185	68	6	8	10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